

# 정관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 상담 · 교육 · 재활 ·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문제, 인권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폭력예방은 물론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복지를 증진하며 장애인의 행복권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2016.2.4. 개정)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지회, 연구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장애인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법적 · 의료적 · 심리적 상담지원
  2.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주 · 단기 보호시설 사업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폭력 피해자 및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4. 장애인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
  5. 장애인 전문 상담원 양성, 전문 봉사자 발굴 및 제반 교육지원 사업
  6.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운동 및 인식개선사업
  7. 장애인 정책 연구 활동
  8. 장애인가정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탁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수혜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후원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찬동하며 후원성금 및 후원물품으로서 지원하는 자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동된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법인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② 제 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탈퇴서)으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임원

제8조(임원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포함)
3.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된 임원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제한) 본 법인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를 임원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1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② 임원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법인은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 회장 및 고문, 자문 위원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총회구성원 1/5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 3.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2.4. 개정)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2.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2016.2.4. 개정)
- 3.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 5.해산에 관한 사항
- 6.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7.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8.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 9.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2016.2.4. 개정)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2016.2.4. 삭제)

7. 법인이 설치할 시설의 장의 임면의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2016.2.4. 개정)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2016.2.4. 개정)

12.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2016.2.4.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회의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6 장 수 익 사 업

제28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따로 임명할 수 있다. (2016.2.4. 개정)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 7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9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명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 한다.

제30조(긴급사안에 대한 사후 승인) 그 사안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사항일 경우 선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2016.2.4. 개정)

##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출연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증한 동산,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기금 및 재원)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2016.2.4. 개정)

제33조(자산의 관리) ①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2016.2.4. 개정)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각종 기부금의 경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2016.2.4. 개정)

제37조(회계잉여금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8조 (정관변경 및 해산) 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2016.2.4. 개정)

## 제 10 장 보 칙

### 제40조 (준용규정)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1조 (운영규정 등)

- ①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② 본회 및 지부에 속한 부설기관의 위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창립총회 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 규정)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2.4. 제정)

2008. 7. 11. 제정  
2016. 2. 4. 개정

